

경제집중 신고 기준 2배 인상

2026년 7월 1일부터

제66.18/2026/NQ-CP호 결의(2026년 7월 1일 발효) 및 제35/2020/ND-CP호 시행령에 따름

x2

경제집중
신고 기준

경제집중 신고 의무란?

2018년 경쟁법 제33조에 따라, 경제집중(합병, 통합, 인수, 합작투자 등)에 참여하는 기업은 거래 실행 전에 국가경쟁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해당 거래가 “경제집중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준은 다음 네 가지 항목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총자산
베트남 내

총매출
베트남 내

거래
가액

결합
시장점유율

일반기업: 기준 2배 인상

기준	기존 기준 (제35/2020호 시행령 제13.1조)	신규 기준 (제66.18호 결의, 2026년 7월 1일부터)	비고
베트남 시장 내 총자산	3조 동	6조 동	계열회사 그룹 포함
베트남 내 총매출/매출액	3조 동	6조 동	시행연도 직전 회계연도 기준
경제집중 거래가액	1조 동	2조 동	다수의 중견 규모 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
관련시장 내 결합 시장점유율	20%	20% (변동 없음)	시장점유율 기준은 변동 없음—20% 도달 시 여전히 신고 필요

유의사항: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용기관,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에 대한 경제집중 신고 기준

제66.18호 결의는 일반기업의 기준만 인상합니다. **신용기관, 보험회사 및 증권회사**는 인수합병(M&A) 거래에서도 다음 신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준	제35/2020호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변동 없는 기준
베트남 내 총자산	보험/증권: 15조 동. 신용기관: 신용기관 시스템 총자산의 20% 이상
총매출/매출액	보험: 10조 동 · 증권: 3조 동 · 신용기관: 시스템 총매출의 20% 이상
거래가액	보험/증권: 3조 동 · 신용기관: 시스템 정관자본 총액의 20% 이상
결합 시장점유율	관련시장의 20% 이상

경제집중 신고 절차

1

온라인 제출

기업은 이제 현장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외에도 국가공공서비스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경제집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 66.18/2026/NQ-CP호 결의 부록 I.2)

2

심사절차

국가경쟁위원회는 07 영업일 이내에 신고서의 완비 여부를 심사한 후, 3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유의사항: 심사 절차는 경쟁법 제34-35조 및 제35/2020호 시행령의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특별하고 기한이 있는 메커니즘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시



2027년 2월 28일

효력 상실

제66.18/2026/NQ-CP호 결의는 국회의 제206/2025/QH15호 결의에 따른 특별 메커니즘으로 제정되었으며, 제35/2020호 시행령의 정식 개정 전까지의 “가교” 방안입니다. 결의에서 정한 새로운 경제집중 신고 기준은 향후 다른 시행령이 제35/2020호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대체할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유의사항: 2026년 7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신고서는 제35/2020/ND-CP호 시행령의 현행 규정에 따른 (더 낮은) 기준을 계속 적용받습니다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팀이 언제든지 도와드립니다. 심도 있는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위해 지금 문의하세요.

기업 및 투자
형사

상시 법률 자문
인수·합병(M&A)

분쟁 해결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치민시 쑤언호아동 하이바쯔 171번지 A&T 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law.com



웹사이트

www.dedica-law.com



지금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을 받으세요.